

III. 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감사위원회 시정요구

제 목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미준수

관 계 기 관 평생교육국 등 4개 실·국·본부

내 용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〔별표 1의2〕 ‘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’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〔별표 6〕 ‘안전·위생기준’에 따르면,

수영장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, ① 서울여성프라자 수영장 등 6개소에서는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, ② 노원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는 자격증 미보유자 및 자격증 유효기간 경과자를 수상안전요원으로 배치하였다.

[표 1]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미준수 현황

연번	시설명	관리부서(수탁기관)	수상안전요원 배치 현황	비 고
1	서울여성프라자 수영장	여성정책담당관 (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)	자유수영시간대에만 배치(1~2명), 수영강습시간에 미배치	'18년 7월 근무인력 배치시
2	50플러스 남부캠퍼스 수영장	인생이모작지원과 (△△△△△△△△△)	"	"
3	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스포츠센터 수영장	장애인자립지원과 (◇◇◇◇)	"	"
4	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	체육정책과 (□□□□□□□□□)	"	"
5	고척체육센터 수영장	체육정책과 (▽▽▽▽▽▽▽▽▽)	"	"
6	동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	여성정책담당관 (◎◎◎◎◎◎◎◎◎◎)	수상안전요원 1명 배치	"
7	노원청소년수련관 수영장	청소년정책과 (◁◁◁◁◁◁◁◁)	안전요원 자격증 미보유자 2명 및 자격증 유효기간 경과자 6명 배치	"

조치할 사항

평생교육국장(청소년정책과장), 여성가족정책실장(여성정책담당관), 복지본부장(인생이모작지원과장, 장애인자립지원과장), 관광체육국장(체육정책과장)은, 소관 공공수영장에서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 6]에 따라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시정요구)